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

—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소개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이란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해 각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에 설치된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경영지도사, 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의미합니다.

종합상담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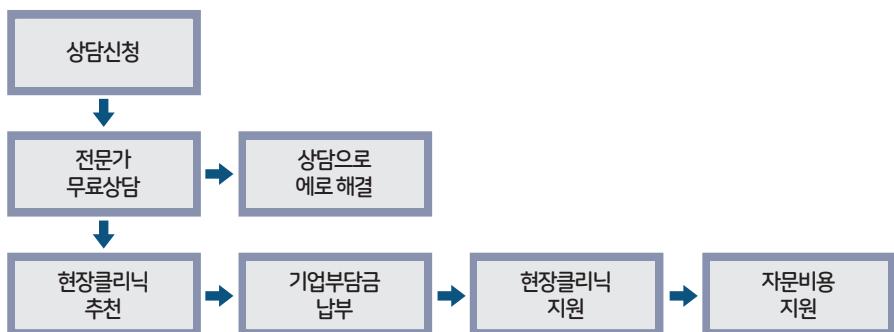
비즈니스지원단의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무료로 상시 상담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클리닉이란?



비즈니스지원단의 종합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해당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에 애로를 해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절차



신청방법(면중 수시)



인터넷 : 비즈니스지원단(smes.go.kr/bizlink/)

전화 : 콜센터(☎1357) 또는 각 지역별 비즈니스지원단

구분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민원실	02-2110-6351~3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051-831-1357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052-210-0031~2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053-659-2270~3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2층	054-859-8162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지 12	062-360-9137~9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061-727-5416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제주시시험연구센터	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21	064-723-2101~3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031-201-6805~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06호	031-820-9040~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032-450-1148~1150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042-865-6181~3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041-564-38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033-260-1625~6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대전동 897-2)	033-655-4147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043-230-5307~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063-210-6436~9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055-268-2546~8

가이드북 일러두기



| 창업분야 |

1. 창업벤처분야 가이드북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관련법규, 창업, 벤처관련 세법, 중소기업청, 국세청, 행정안전부 예규 및 행정해석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주요법령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 지침」 등이며 내용은 법전이나 인터넷상(사이트명, www.law.go.kr)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행정해석은 주로 중소기업청의 질의회신이나 관련공문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 상세한 내용은 지면관계상 자료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만을 게재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HAPTER
01

창업

-
- 1. 창업 및 창업자의 정의
 - 2.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 3. 공장의 설립과 등록
 - 4. 법인설립과 사업자 등록
 - 5. 벤처기업
 - 6. 창업벤처기업의 조세 감면
 - 7. 창업기업의 부담금 감면
 - 8. 기타

CONTENTS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소개

가이드북 일러두기

1. 창업 및 창업자의 정의 [창업진흥과]

Q1. 창업이란?	12
Q2. 기존공장을 매입한 후 공정을 추가해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15
Q3. 기존기업으로부터 분리된 별도법인에 대한 창업인정 여부	16
Q4. 기존공장의 인수 후 증설 등을 통한 공장 설립	17
Q5.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여부	18
Q6.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별도의 공장을 설립하여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해당 여부	19
Q7. 기존법인의 일부사업을 분리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해당 여부	20
Q8. 기존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 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해당 여부	21
Q9. 기존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창업해당 여부	22
Q10. 기존사업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인가?	23
Q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지원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다가 지원대상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창업해당 여부)	24
Q12.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복수의 개인과 공동명의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정 여부	25
Q13. 창업법인의 대표이사 겸직 시 창업인정여부	26
Q14. 임대공장 영위자가 자가 공장을 갖게 되는 경우 창업 여부	27
Q15. 사업을 분리할 경우 최대주주 등의 지속기간	28
Q16.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영위사업자가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9
Q17. 개인사업자가 기존장소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해당 여부	30
Q18.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다가 타인의 공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창업해당 여부	31

2.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창업진흥과]

Q19. 창업사업계획승인이라?	34
Q20.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리 기간	35
Q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 설립의 차이	36
Q22. 농공단지의 공장을 낙찰받은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38
Q23.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장확장 시 적용혜택	39
Q24. 경락받은 부지의 원상회복 없이 창업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40
Q25. 임대공장등록증이 있는 창업자에 대한 창업사업계획승인 여부	41
Q26. 500㎡ 미만인 소규모 공장의 창업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42
Q27. 2개 이상의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43
Q28. 사업장을 이전하여 다른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	44
Q29. 사업포기한 공장부지의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대상 여부	45
Q30.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를 인수하여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46
Q31.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를 양도할 경우 변경승인 가능 여부	47
Q32.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부지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양도하는 사례	48
Q33.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용동의서 첨부의 범위는?	49
Q34.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자의 정의	50
Q35. 업종관련 인·허가 사항을 받기 전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51
Q36. 사업계획승인 통합업무처리지침 별표의 인·허가 내용과 개별법령의 규정이 다를 경우의 적용기준	52
Q37. 창업사업계획승인 시 일부 승인의 가능 여부	53
Q38.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지역의 주민동의서 제출 여부	54
Q39. 승인 후 4년이 경과한 공장부지를 경락받은 경우 처리	55
Q40.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의제처리 시 구비서류와 제출시점	56

Q41.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승계	57
Q42. 경매로 인한 이전 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변경 등	58
Q43. 창업법인의 지분변동과 사업계획의 승인 효력	59
Q44. 개인사업자로 승인받아 공장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인으로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60
Q45. 승인받은 건축면적 또는 부지면적이 감소하였을 경우, 변경승인대상 여부	61
Q46.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업체가 제조업종 외의 업종 추가 시 변경승인 대상 여부	62
Q47. 사업계획변경승인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63
Q48.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에 타 법인이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 가능 여부	64
Q49. 사업계획승인 취소 시 청문절차 없이 직권취소 가능 여부	65
Q50. 사업계획승인된 부지의 양도 가능 여부	66
Q51.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	67
Q52.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철회	68
Q53. 공동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사업계획의 경우, 개별업체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계획의 유효 여부	69
Q54. 창업사업계획승인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승인사항의 유효 여부	70
Q55. 사업계획승인 당시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 변경승인 가능 여부	71

3. 공장의 설립과 등록 [창업진흥과]

Q56.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도시형공장 설립 가능 여부	74
Q57.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을 경낙받은 경우 사업추진가능 여부	76

4. 법인설립과 사업자 등록 [창업진흥과]

Q58. 주식회사 설립관련	78
Q59. 온라인법인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등기	81
Q60.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84
Q61. 자본금10억 미만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시 예외 사항	86
Q62. 창업 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기업형태 결정 방법	87

Q63. 법인기업의 형태별 비교	88
Q64. 유한책임회사의 형태와 성격	90
Q65. 유한회사제도	91
Q66.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	92
Q67. 인·허가사업의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93
Q68.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할 점	94
Q69.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절차와 방법	95

5. 벤처기업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창업진흥과]

Q70. 벤처기업이란?	98
Q71. 벤처투자기업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	100
Q72. 연구개발기업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	104
Q73. 벤처기업의 간신과 확인취소 요건	106
Q74.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에 의한 벤처기업확인	108
Q75.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110
Q76. 신생 기술창업기업의 벤처 유지방법	111
Q77.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112
Q78. 교육공무원 등의 창업 시 휴직 허용, 겸직	114
Q79.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117
Q80.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특례	120
Q81.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121
Q82. 실험실공장의 설치	122
Q83.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특례	124
Q84. 벤처기업의 합병(M&A) 특례	126
Q85.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혜택	128

6. 창업벤처기업의 조세 감면 [벤처정책과, 창업진흥과]

Q86. 창업중소기업의 국세 감면	130
Q87.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131
Q88.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32
Q89.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	133
Q90.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같은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감면 적용여부	134
Q91.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시 확인일 기준	135

Q92.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136
Q93. 수도권 내 지역에서의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감면 적용 여부	137
Q94. 같은 업종의 영위 여부와 창업중소기업 감면분 추징여부	138
Q95.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소득세 감면여부	139
Q96.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한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	140
Q97. 영농조합법인의 취득세 감면 여부	141
Q98.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자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면제대상 여부	142
Q99. '직접 사용하는'에 대한 범위 해석	143

7. 창업기업의 부담금 감면 [창업진흥과]

Q100.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시 부담금 감면제도	146
Q101. 임대공장을 운영하다 자가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감면 여부	148
Q102.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전용하는 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150
Q103. 사업장이 2개소 이상인 기업의 소기업적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153
Q104. 창업공장에 대한 부담금 및 세제감면 내용	154

8. 기타 [창업진흥과, 지식서비스창업과]

Q105. 창업기업의 자금계획 수립방법	156
Q106. 창업지원제도의 활용방법	158
Q107.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의 공장심사	159
Q108. 1인 창조기업의 규모 확대로 인한 인정의 특례	160
Q109. 1인 창조기업 창업	161
Q110. 창업자가 창업 전에 고려할 사항	163
Q111. 사업타당성 분석 체계	164
Q112.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66
Q113. 제조업 창업절차	169
Q114. 제조업의 범위	170
Q115. 도·소매업 창업절차	172
Q116. 외국인투자기업	174

편집위원 소개

1. 창업 및 창업자의 정의

Q1

창업의 정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창업에 대한 법률적 용어정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타 법규에서는 창업지원을 위해 업종, 설립기간, 지원내용,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사업계획승인, 창업기업의 부담금감면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제1항).

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

(1) 창업중소기업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 밀여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다음에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 ②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창업중소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 밀집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다음에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②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

· 다음의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라. 창업자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가) 창업자가 법인이면 : 법인설립등기일

나) 창업자가 개인이면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3항)「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은 반드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업종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개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과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과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Q2

기존의 주물공장을 매입하여 산업기계부품제조공장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 공정상에 기존공장의 기계설비를 일부 이용함으로서 주물의 공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산업기계부품을 만들어 냅니다. 이 경우 창업증소기업에 해당되는지요?

A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으나 같은 장소일 경우에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때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 사업승계의 예(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2조 제1항)

1.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4.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5.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6. 기존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이 영위한 사업과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Q3

기존기업으로부터 분리된 회사가 별도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분리설립된 회사를 창업법인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기존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Q4

지식재산권 실적 관리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기존기업이 영위하던 공장을 다른 법인이 매입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록 기계 등을 증설하였을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Q5

개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가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제품을 생산 하려고 하는데 창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경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은 기존의 개인과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됩니다.

Q6

주방용전기기기제조업(28511)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기체여과기 제품제조업(29174)을 같은 개인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이를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요?

A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의 개인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업종으로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립된 법인은 별도의 권리주체로서 새로운 사업자로 보아 창업에 해당됩니다.

Q7

담배필터제조업과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담배필터 사업을 분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담배필터제조업과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담배필터 사업을 분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된다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사업분리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사업분리로서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Q8

설유기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전기부품제조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기존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 법인에 대한 사업의 승계 없이 실질적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사업의 승계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1. 사업승계의 예

- (1)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2)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3)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4)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5)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6) 기존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이 영위한 사업과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해당 여부

Q9

강관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신설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다른 장소에서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설법인이 세제감면 및 자금지원을 받는 기간 내에 기존법인이 폐업을 한다면 신설법인은 위장창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10

밸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인의 배우자가 다른 장소에서 개인사업자로서 기어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기존기업의 사업자인 개인과 배우자는 사업자 측면에서는 서로 별개의 사업주체이므로 기존기업의 배우자가 설립한 사업체는 새로운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창업이 아닌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Q11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육류가공업(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폐업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위하던 부동산업을 폐업하고 육류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4., 2016. 5. 29., 2018. 12. 11.>
 1. 삭제 <2018. 12. 11.>
 2. 삭제 <2018. 12. 11.>
 3. 삭제 <2018. 12. 1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통주점업
 2. 무도유통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Q12

문구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입니다. 영위하던 문구제조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2명의 개인들과 함께 3인이 공동사업자로 다시 문구제조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되는지요?

A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다른 2명의 개인들과 함께 3인이 공동사업자로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Q13

기존법인의 대표이사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
이사직을 겸직할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을 창업
으로 볼 수 있나요?

A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존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은 기존법인과 별도의 사업주체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합니다.

Q14

2014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을 임차하여(규모가 승인대상이 아니어서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공장)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0년에 개인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해당 여부와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귀하의 창업기준시점은 2014년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개인소유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은 아니나, 사업을 개시한지가 7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창업자」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창업자의 정의(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3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사업을 개시한날은 다음과 같다.
 - ①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등기일
 - ②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①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6., 2017. 11. 28.>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Q15

기존의 사업을 분리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된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요건은 얼마 동안 지속 하여야 하나요?

A

기존의 사업을 분리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요건유지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Q16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입니다.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공장을 경락받아
제조업을 시작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공장을 경락받아 제조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비록 경락에 의하여 제조업을 새로이 시작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17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위
하는 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개인사업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Q18

기존에 이미 설립된 법인이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다가 기존의 다른 법인의 공장을 양수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코자 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신설된 법인이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다가 기존법인의 공장을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한다면 당초 설립일에 창업을 한 것으로 보며 기존법인의 공장을 양수하는 것은 타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창업일부터 7년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므로 창업일부터 7년 이내에 양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창업자의 정의(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 시행령제3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사업을 개시한날은 다음과 같다.

-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등기일
-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

창업

2.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Q19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공장설립과 관련된 여러가지 인·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의제처리 하여 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여기서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가. 근거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내지 제37조
- 2) 「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개정 2019. 9.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48호)

나. 적용범위 및 대상

- 1)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
 -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장
 - ②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 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개정 2008.8.25>
 - ③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7호의 공장
- 2)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 ① 법 제2조제2호의 창업자 <개정 2014.6.24>
 - ②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다. 승인신청 시 구비서류

-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라. 처리절차

승인 신청(설립자) → 실무종합/심의회검토(기관 내 협의)/필요 시 현장 확인(시·군·구)
→ 협의(기관 외) (관계기관) → 주무부서(총괄) (시·군·구) → 승인서 교부(시·군·구)

Q2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3조 3항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는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사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창업민원 주무부서장 주관하에 실무종합 회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지침의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해석하여야 하나요? 만약 7일 이내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면 실무 종합회의 이외의 의제처리 부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A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에서 '시·군·구청장 소관사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함은 의제처리를 포함하여 다른 외부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라는 의미입니다.

Q21

새로이 공장을 설립하여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창업공장의 설립 신청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창업자가 공장의 설립신청을 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신청을 하는 경우의 설립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동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①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5. 2. 3., 2018. 12. 31.〉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②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0. 6. 8., 2015. 2. 3., 2017. 1. 17., 2018. 12. 31.〉

 1.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
 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의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
 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m³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만 해당한다)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2.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14.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1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6. 8., 2015. 2. 3.〉

Q22

농공단지에서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다가 휴업 또는 폐업된 기존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아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A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3조(적용대상)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의 창업자와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공장설립이 불가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공장설립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창업자 <개정 2014.6.24>
 2.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Q23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공장을 등록하여 입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사세가 확장되어 개별입지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되나요? 또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될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창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창업보육센터에 공장을 등록하여, 입주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창업일부터 7년이내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중소기업창업자의 공장설립에 관한 인, 허가를 일괄처리해 주는 제도이므로 조세의 감면은 당초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감면기간 내에 있는가의 여부와 감면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사업계획의 승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 법인세(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인지세(「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 등록면허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대한 감면)제3항)
- 취득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대한 감면)제1항)
- 자산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대한 감면)제2항)

Q24

창업사업계획이 취소된 부지를 경락받아 공장을 설립하여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지의 원상회복 없이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 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 처리지침」 제28조(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 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의 원상회복 없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8조(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 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Q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자가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대공장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공장의 확장을 위하여 새로이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요?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대공장등록을 한 경우라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창업자로서 7년 이내의 사업자가 새로이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창업자 <개정 2014.6.24>
 2.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Q26

창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창업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의제처리를 통하여 공장설립을 할 경우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③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Q27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아 공장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확장 필요성이 생겨 다른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창업자에게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의 창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창업자 <개정 2014.6.24>
 2.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Q28

**대전에서 2013년 02월 13일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
하던 중 2015년 05월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하여 다른 업종의 제조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은 동법 제2조의 ‘창업자’ 즉,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Q29

기존의 창업자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를 인수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데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취소를 한 경우 이를 인수한 자가 창업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만족하는 제조업 창업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30

당초 창업자는 합성수지제조업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타인에게 매각하였고, 매수인은 본 공장을 인수하여 호안 블럭을 제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사의 창업승인을 취소하고, 매수인이 설립한 법인명의로 신규 창업승인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양수인이 창업자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창업사업계획승인 업종과 다른 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하고, 전매·임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임차인 및 경력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28조(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임차인 및 경력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Q31

창업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공장을 설립 중 자금
사정으로 창업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설립 중인 공장을 양도받아 창업사업
계획변경승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요?

A

창업자가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건축 착공 전에 창업을 포기하였다면 승인권자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자가 창업자이면서 동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한다면 토지의 원상회복은 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양수인의 명의로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원로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Q32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업체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업체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다만, 창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창업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3.8.6.〉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 ③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④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날까지 공장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Q33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변경신청 시의 심청토지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이 되어있을 경우 가처분 및
가압류권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변경신청 시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호에 따라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유권 및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자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단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은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의 등기된 물권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점과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법의 보호가 미약하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창업자는 법 제33조 제1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Q34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3조 4호의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자의
개념이 공장건축물을 새로이 지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그렇게 해석된다면 기존 폐업공장을 양수한 창업자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다 하여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공장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의제처리 하여 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창업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등과 관련된 시설 등이 설치된 공장부지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폐업공장을 양수한 창업자가 기존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Q35

식품업 등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의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개별법령상의 인·허가 사항을 선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창업사업계획승인 후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A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주요 검토사항은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 건축, 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개별업종의 인·허가 사항과는 무관하므로 개별법령상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의 선행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창업사업계획승인이 나는 경우에도 개별법령상에서 업종별로 정하고 있는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공장설립이 완료되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Q36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의
별표 인·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개별 법령상의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요?**

A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별표 「인·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련된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규정된 의제처리와 관련된 각 개별 법령상의 규정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므로 개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동지침의 별표 처리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개별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37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의제처리 사항 중 일부만을 승인하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요?

A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의 의제처리사항은 사업계획승인 시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동법상의 의제처리 사항 중 일부만을 신청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고 의제처리를 받지 아니한 나머지 사항은 개별 법령상의 절차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서 의제처리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공장설립이 가능합니다.

Q38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해당지역 민원인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공장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창업자의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공장설립과 관련된 각종 개별법상의 인·허가 사항을 일괄 검토하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 의제처리 사항에는 환경관련법령 및 국토이용 관련법 등에서 입지별로 규정한 수질, 소음, 대기 등의 환경과 관련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창업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요건을 법령상에서 규정한대로 검토되어 법적근거가 없는 별도의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창업자는 법 제33조 제1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Q39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 건축물 준공을 받았으며, 현재 공장완료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이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취소사항이 아니면 창업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4년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를 하지 아니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락받은 자가 창업자로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사업주체가 변경되므로 창업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락받은 자가 창업자가 아니라면 기존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2017.7.26>
 -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19.6.11>
- 1. 사업자(법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

Q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의제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출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A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의제처리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제처리대상은 각 개별법의 내용을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되어 창업사업계획승인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의제처리와 관련된 각종 서류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신청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41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될 경우에는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동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될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사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3.8.6).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원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2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5.28.>

Q42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부지조성, 건축 및 일부 제조 시설 설치 등 공장설립을 진행하여 오던 업체입니다. 채권자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등 부지 및 건물 소유권이 이전(제조시설 제외)된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취소 가능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A

경매에 의하여 인수한 사람이 창업요건에 해당되어 창업사업계획승인대상자로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어 최초 승인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승인 등을 한 경우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7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제2항, 「창업사업계획 통합 업무처리지침」 제26조에 의하면 4년 이내에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승인 후 4년이 경과하였고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최초 창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 경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2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 5. 28.>
 - ②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

Q43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법인의 주주가 공장건축 완료 전 자금난으로 일부 지분(40%)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경우 지분의 일부 매수인이 창업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업종의 변경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A

법인의 내부 지분변동은 창업사업계획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착공이후 사업계획승인 받은 기업의 매각에 따른 대표자 변경이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변경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제18조(변경승인) 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된 인·허가 사항 중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24〉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2(변경 신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사업계획승인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회사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한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4.6.24〉
 3.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 및 법인 형태 변경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계획승인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Q44

개인의 명의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계속하여 공장설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법인 명의로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이 가능한지요?

A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2(변경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사업계획승인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회사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한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 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
 3.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 및 법인 형태 변경

Q45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장부지 및 건축면적을 감소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공장의 건축·부지·부대시설 면적의 경미한 감소는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지만,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 등을 의제처리 하였을 경우 해당법률이 정한 변경허가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제18조(변경 승인) 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된 인·허가 사항 중 개별법률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1. 사업자(법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
 2.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장용지면적
 4. 공장건축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 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부대시설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 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Q46

베어링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입니다. 공장설립을 추진하던 중 제조업종 이외의 업종 즉, 도·소매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공장설립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제도이며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은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와 별개의 사항으로서 도·소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당해 도·소매 업종을 기준 공장 내에서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부지 및 건축면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면적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아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한 후, 당해 업종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Q47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업체가 변경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변경승인(신고)을 하지 않을 때의 처분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업체가 변경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변경승인(신고)을 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변경승인신청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별칙조항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승인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공장등록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Q48

창업법인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내용에 대하여 동일 장소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법인 이외의 다른 법인이 창업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할 경우 기존법인이 득하였던 승인사항 승계 및 취소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공장의 건축착공신고를 한 부지를 창업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창업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이 되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사유에 해당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토지 및 건물의 사용승락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제18조(변경 승인) 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된 인·허가 사항 중 개별법률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3.8.6.).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Q49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산지(농지)전용 의제로 협의를 득한 후 협의기간 내에 사업의 착공을 하였으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 없이 직권취소가 가능한지요?

A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7조 제4항에서는 동조의 제1항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37조 제1항의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어 사업계획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Q50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부지 및 건물을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받은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취소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공장의 건축착공신고를 한 부지를 창업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변경(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3.8.6).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1. 사업자(법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

Q51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부도 또는 양도로 인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 승인권자는 반드시 원상회복 조치를 명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원상회복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승인권자의 재량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의 활용도 측면,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원상회복 조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고,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제28조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전매·임대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 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새로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제28조(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Q52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공장설립을 추진
하던 중 당초 계획했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제조업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하는 경우, 창업
사업계획승인 철회가 가능한가요?

A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는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절차 없이 당해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취소가 가능하므로, 승인권자에게 창업사업계획승인 포기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써 제출하면 사업계획승인 철회가 가능합니다.

Q53

10개 사업자가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사용하는 공동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던 중 1개 사업자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전매행위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의 추진 및 처리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시 공동사업계획승인서와 함께 사업자별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변경승인 등 사후관리도 공동사업계획 부문과 사업자별 사업계획 부문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 사업자의 사업계획 부문에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해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은 취소하여야 하며 공동사업계획 부문이 승인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공동사업계획 승인은 유효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서·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동사업계획승인서를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시 사업자에게 변경승인·신고 대상 및 절차, 승인취소 요건 및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2005.11.4>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공동사업계획 승인서와 함께 사업자별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하며 변경승인 등 사후관리도 공동사업계획부문과 사업자별 사업계획 부문을 별도로 관리한다.

Q54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4년이 경과하도록 공장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창업사업 계획승인에 대하여 승인취소를 아니 하였으며 행정청의 공장건축 완료촉구(5회)에도 불구하고,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A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는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절차 없이 당해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가 가능하므로, 승인권자에게 창업사업계획승인 포기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써 제출하면 사업계획승인 철회가 가능합니다.

Q55

당초 법인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작년에 공장을 지어놓고 부도가 나서 올해 법인을 폐업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인으로 다시 공장을 창업하려고 하는 경우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공장등록은 불가능한 것인지요?

A

당초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공장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해야 될 것이며 공장등록 이전에 창업자인 새로운 법인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 사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장의 등록)
- 사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제18조(변경승인)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

창업

3. 공장의 설립과 등록

Q56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수행하려는 창업기업입니다. 이러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건축법」 제1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1) 대상자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2) 특례내용

① 「건축법」 제1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시장, 군수 등의 공장등록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에 대한 시설군의 분류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4항 제2호에 따른 산업 등 시설 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 가. 운수시설
- 나. 창고시설
- 다. 공장
-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마. 자원순환관련시설
- 바. 묘지관련시설
- 사. 장례시설

Q57

공장용지 및 건물을 경낙받아 등기이전 완료하고, 공장 설립신고를 하고자 관할 시에 확인하니 경낙 전의 업체가 공장설립은 완료하였으나, 공장완료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경낙받은 본인이 이전의 완료업무는 무시하고, 공장등록 혹은 제조물 설치 허가를 새롭게 득한 후 사업 개시가 가능한 것인지요?

A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체를 경락받은 사업자가 창업자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업종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 2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변경신고와 공장완료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2(변경 신고)

제18조의2(변경 신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사업계획승인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회사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한 경우
2. 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4.6.24>
3.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 및 법인 형태 변경
4. 법인설립과 사업자 등록

4. 법인설립과 사업자 등록

Q58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발기인 자격, 자본금, 임원, 공고방법, 변태설립 등)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발기인에 관한 자격은 없으며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고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2. 자본금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주의 액면가격을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론상 100원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신용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에 필요한 적절한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의 경우에는 최소자본금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 임원

임원에는 이사와 감사가 있으며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나 자본금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는 2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상호

상호는 동일한 목적의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고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문의해 보신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공고방법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으며 전자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2곳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적방법이 안 될 경우 공고하게 될 일간신문을 정해야 합니다.

6. 사업목적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기재하며 여러 개의 사업목적이 가능합니다.

7. 변태설립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②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 수량 ·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③ 회사 설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 가격 · 수량 및 양도인의 성명
 -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8. 주식회사 설립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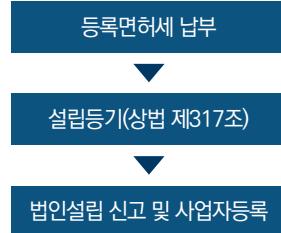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출자를 이행한 후 또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여 창립총회가 종결한 때에는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주식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상법」 제317조).

회사 설립 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사람에게는 회사설립의 등록면허세 배액(倍額)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상법」 제636조 제1항), 회사설립 등기를 한 후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



발기설립	모집설립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293조) 주의 모집(상법 제301조) 모집주주 청약(상법 제302조) 발기인의 주식배정(상법 제303조)
주금납입(상법 제305조)	주금납입(상법 제305조)
	창립총회(상법 제308조)
임원선임(상법 제296조)	임원선임(상법 제312조)
설립경과조사	설립경과조사



9.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법인설립

법인설립을 위해 30개 이상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7개 기관을 방문해 처리하던 법인설립 업무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법인설립시스템입니다.

- ①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작성하던 30개 이상의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자동 생성합니다.
- ② 7개의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였던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한번에 신청 및 처리합니다.

▣ 참고 : 회사설립 관련 사이트.

-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r.kr)
- * 법무부(www.moj.go.kr)
- * 금융결제원(www.kftc.or.kr)
- * 위택스(www.WeTax.go.kr)
- * 민원24(www.minwon.go.kr)
- * 국세청(www.nts.go.kr)
- * 4대사회보험포털(www.4insure.or.kr)

Q59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싶습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과 이용방법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란 회사설립 시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보험 가입에 이르는 설립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하여 창업자의 서류작성과 기관방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축한 회사설립 시스템입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http://www.startbiz.go.kr>)에서 설립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법인설립 사전 준비사항

가. 공인인증서 만들기

법인설립 시 임원(이사, 감사, 발기인, 주주 등)은 범용 개인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 회원가입

1) 모든 구성원(이사, 감사 등)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서 회원가입 및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회사명 정하기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주식(유한, 유한책임, 합명, 합자)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19조), 회사의 표시는 「주식회사(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사용하며, 그 위치는 상호의 앞·뒤 어디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상호를 정하였으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상호검색은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등기소 내의 동일상호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점소재지 관할법원등기소는 반드시 법인등기(상법법인) 업무를 취급하는 등기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인터넷상호검색, 관할법원의 상호검색 모두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 법인설립등기 과정에서 상호에 대한 변경(보정)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 CI, 명함 제작 등 상호와 관련된 업무는 법인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후 회사설립시작하기에서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마. 법인인감도장 만들기와 법인인감도장 찍힌 이면지확인

추후 회사설립 시작하기에서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바. 회사목적 결정하기

회사의 영업내용을 뜻하므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목적은 「제조업」, 「수출입업」, 「도·소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여 회사목적사업을 결정하시면 편리합니다.

- 사업목적의 샘플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	제조 및 도소매 분야	부동산 관련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컴퓨터 및 통신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1.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서비스의 판매업1.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1.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1. 00 물품 제조 및 관련 도소매업1. 00 물품 판매업1. 소매업 관련 용역 및 수탁사업1. 자동차 운수업, 복합운송사업, 물류센터운영업, 창고업1. 주차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주택 분양 및 임대업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1. 부동산 임대, 관리 용역업1. 부동산 컨설팅업1. 건설 용역업

※ 마지막 항에는 “위와 관련한 부대사업일체”라는 문구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 시스템에서 사업목적을 작성할 때에는 자동으로 위의 문구가 입력되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 주거래은행에 주금납입하기

주거래은행에 발기인 대표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본금액을 납입합니다. 단, 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 각 주주의 이름으로 각 주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합니다.

잔액(고)증명서의 발급은 주식금의 납입이 끝나고 회사의 업무집행조직(이사·감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선임 및 이사·감사에 의한 조사보고를 진행하기 전 발급합니다.(잔액(고)증명서를 통해 이사·감사가 주식금액 납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제 2금융권은 제외(예 : 우체국, 저축은행 등)

아. 금액이 있는 통장이나 신용카드 준비하기

지방세납입, 등기수수료 납부용으로 주금납입통장이 아닌 일정금액이 들어 있는 통장이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준비하세요.

자. 컴퓨터에 스캐너 연결하기, Twain드라이버가 설치된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법인인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근거서류 등).

<참고> 재택창업시스템(<http://www.startbiz.go.kr>)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StartBiz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Online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법인설립신청' (Business Registration Application), '법인설립정보' (Business Registration Information), '법인설립체험' (Business Registration Experience), '참여마당' (Participation Plaza), '법인설립소개' (Business Registration Introduction), and a search bar with a magnifying glass icon.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창업을 위한 첫걸음!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으로 시간절약! 비용절감!' (First step for entrepreneurship! Save time and money with the online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Below this, there is a section titled '온라인법인설립!' (Online Business Registration) with a lightbulb icon and a list of steps: STEP 01 (온라인설립에 필요한 기본정보입력), STEP 02 (간접증명 및 주금납입증명발급), STEP 03 (법인등록면허서금부), STEP 04 (법인설립 등기신청), STEP 05 (사업자등록신청), and STEP 06 (4대사회보험신고).

On the right side, there are two boxes: '법인설립체험' (Business Registration Experience) which shows a lightbulb icon and a list of steps, and '법인설립진행업무 시작' (Business Registration Process Start) which shows a person working on a laptop and a list of steps.

At the bottom, there are links for 'FAQ', '공지사항', '질의응답', 'interview', 'e소식지 뉴스레터', '팝업존', and '고객상담서비스'.

Q60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의 증가와 더불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는데 법인전환 절차와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법인전환의 유형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사업 양도 ·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는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개인이 경영하던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기업에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 양도 ·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의 절차와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전환의 절차

현물출자의 방법	양도양수의 방법
1. 법인전환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의사결정	1. 법인전환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의사결정
2. 법인전환기준일의 결정	2. 법인전환기준일의 결정
3.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	3. 법인설립서류의 작성
4. 법인전환기준일 전에 사업자등록신청	4. 법인설립 등기
5. 법인전환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개인기업의 결산	5. 법인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법인설립 신고
6. 개인기업의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신고	6.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의 작성
7. 자산 및 부채의 감정	7. 법인전환기준일 기준으로 개인기업 결산
8. 법인설립서류의 작성	8. 자산 및 부채의 감정
9. 법인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9. 이전 자산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명의 변경
10. 이전 자산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명의변경	10.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 거래처에의 통지 및 관련 서류, 마크, 표시 등의 변경	

2. 법인전환 시 유의할 점

(1) 법인의 자본금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총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① 관련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

개인기업에서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 특히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거래관계를 통한 신용의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② 법인전환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의 비교

법인전환 절차의 복잡성과 소요비용의 크기 등을 검토하여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합니다.

Q61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10억 미만 발기설립에 의한 경우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리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10억 미만 발기설립에 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정관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며,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고,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2인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령

-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①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 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상법 제409조(선임) ④ 제1항, 제296조 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Q62

신규로 제조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기업을 창업 후 기업의 규모가 성장한 다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법인기업으로 창업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A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설립절차, 자본조달, 세제 등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를 비교한 후 회사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절차	사업자등록으로 간편한 절차	정관 작성, 법인설립절차 등 이행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활동에 대한 단독 무한책임 ·신속한 의사결정 ·경영능력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형태에 따라 분류 (유한책임, 무한책임) ·의사결정의 저속성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능
기업주 활동	기업주활동의 자유	기업주활동의 제약(상법 등)
자본조달	개인의 전액출자로 자본조달 한계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거액의 자본금 조달 가능
이윤분배	이윤의 전부를 개인이 독점	출자자의 지분에 의해 분배
기업영속성	기업의 영속성 결여 (개인의 사고 등)	기업의 영속성 유지
세제상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 과세(6~42%)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세금부담에 유리 ·대표자 본인의 급여 불인정 ·장부기장 등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과세(10~25%)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세금부담에 유리 ·대표자의 급여인정 ·장부기장 증빙징취 등의 엄격성 요구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인 접촉과 비밀유지에 유리 ·대외 신용도 취약 ·창의 노력의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금의 유가증권화 가능 (재산 이전 용이) ·대외적인 신용 유리 ·경영관리의 효율성

Q63

법인으로 창업을 하고자 합니다. 법인의 형태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협동조합법인 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인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주주, 출자자 등의 환경요인과 향후 경영전략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별 특성을 비교하여 제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협동조합
법적근거	상법	상법	상법	상법	상법	협동조합 기본법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유/무한 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발기인수/사원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2인 이상	2인 이상	5인 이상
출자의 종류	금전, 현금(주식)	금전, 현물	금전, 현물	금전,현물, 노무, 신용(지분)	금전,현물, 노무, 신용(지분)	금전, 현물
정관인증	10억 이상 발기설립 및 모집설립 시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필요
출자단위	1주에 100원 이상 자본금 기준 없음	1주에 100원 이상 자본금 기준 없음	출자한도 없음 자본금기준 없음	출자한도 없음 등기 시 명시	출자한도 없음 등기 시 명시	출자한도 없음
관선 검사인 선임	변태설립 시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의결 기관	주주총회 (1주 1의결권)	사원총회	사원총회	무한책임 사원의 동의	무한책임 사원의 동의	조합원 총회
주주와 사원의 이동	원칙상 자유 정관에 양도 제한 가능	좌동	다른 사원의 동의 필요 업무진행 사원 외의 경우 업무 집행사원 동의 필요	무한책임 사원 동의 필요	무한책임 사원 동의 필요	조합원 총회 의결
조직변경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 회사로 변경 가능	주식회사로 변경 가능 (법인 인가 필요)	주식회사로 변경 가능 (법인인가 필요)	합명회사로 변경 가능 (전 사원 동의 필요)	합자회사로 변경 가능 (전 사원 동의 필요)	조직변경 규정 없음
합병	주주총회 결의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와 합병 가능 주식회사와 합병 시 법원인가 필요	총 사원의 동의	전 사원의 동의 필요	전 사원의 동의 필요	전 조합원의 동의 필요 협동조합 이외의 조직과 합병 불가

Q64

최근 상법에 유한책임회사제도가 새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각 사원이 출자금액 범위에서만 대외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유한책임자(유한책임사원)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유한책임자로만 구성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습니다.

차이점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 감사 제도가 있어 이들 의사결정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한책임회사는 총회, 이사, 감사 등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같은 주주총회가 없이, 유한책임사원들의 개별적인 합의에 의해 회사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게 되며 업무집행자는 주식회사와 같이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들 간의 개별적인 합의로 업무집행자를 정하게 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기타,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보다는 그 운영 면에서 훨씬 더 탄력적이고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기업이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업체에서 많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자본을 유치하거나 주주 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자 할 경우 그리고 주주총회나 이사, 감사제도와 같이 의사결정기관을 별도로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주식회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법 제287조의18(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Q65

예비창업자입니다 유한회사로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 하려고 합니다. 유한회사의 출자단위와 자본금, 사원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는 회사이며 출자단위는 1좌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하며, 자본금, 사원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11년 4월 14일 개정으로 대부분이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로 인한 출자금의 납입 시 금융기관의 주금납입증명이나 예금잔액증명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증권시장에의 상장은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상법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상법 제553조(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법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Q66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립요건과 회사의 형태 등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관련법령

- 농어업경제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
 -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 농어업경제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 농어업경제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Q67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법인의 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그리고 허가신청방법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인·허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허가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다음 주무관청에 해당업종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허가증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허가증이 교부된 후에 세무서에 보완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Q68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장이 확정이 될 경우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자금출처명세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형장소에의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5.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종된 사업장에 대한 위 제'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표 생략)
 - ④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Q69

제조업을 창업하고자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 절차와 방법 그리고 세금문제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와 건물 등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개인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법인으로 양도하는 데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현물(재산)의 가치평가의뢰

- 현물을 출자하는 발기인은 공인된 감정인(감정평가기관)에게 평가를 의뢰



현물의 평가액 결정 및 통보

-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에서 현물출자의 대상물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신청인에게 통보



정관에 기재 (발기인조합)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대상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



현물출자의 이행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납하여 교부함



이사와 감사의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의 이행(주금납입 포함)이 원료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	
검사인의 선임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는 취임 후 관할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함 - 검사인의 선임신청을 이사 전원의 연서로 신청서를 작성
▼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과 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검사인의 조사보고 소요기간 : 통상 15일 이상 소요) -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서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	
법인설립등기신청	법인설립 등기 신청

- 기술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에 한함),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5. 벤처기업

Q70

벤처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것인지 벤처기업의 정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가. 개요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오다가 2006년 6월 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근거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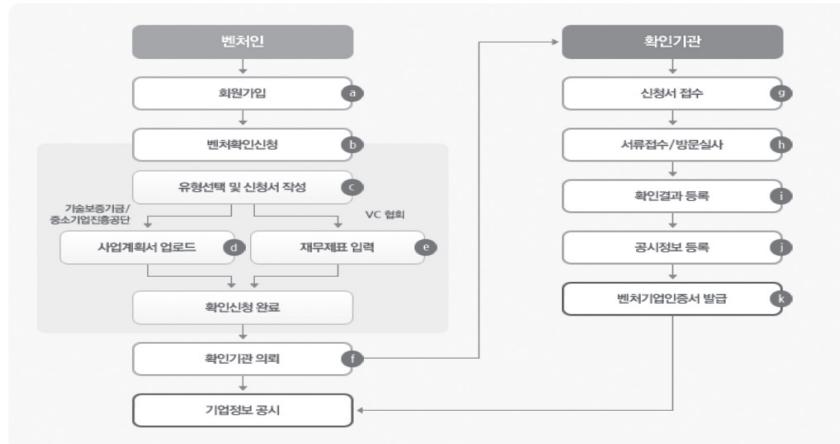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28호)

다. 벤처기업 확인 요건과 신청방법

벤처기업을 확인받기 위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벤처인 (www.venturein.or.kr)을 통해 벤처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확인 신청은 벤처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벤처확인신청 진행절차 흐름도〉



라. 벤처기업의 유형과 확인기관

- 벤처투자기업(한국벤처캐피탈협회)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연구개발기업(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예비벤처기업(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마. 벤처기업확인 대상업종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4에 의한 [별표 1]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0. 2.>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4 관련)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통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통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비고: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Q7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일정금액의 투자를 받는 경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및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벤처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일정금액을 투자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벤처기업 확인요건(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이 당해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 이상
- 그 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문화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

※ 벤처투자기관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③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④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⑤ 한국벤처투자조합
- ⑥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
- ⑦ 개인투자조합
- ⑧ 한국산업은행
- ⑨ 중소기업은행
- ⑩ 한국산업은행
- ⑪ 「은행법」에 따른 은행
- ⑫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관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외국투자회사
- ⑭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 ⑮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투자회사
- ⑯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의 범위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개인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합계가 1억원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 1) 벤처기업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 나.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 나.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2)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나. 신청방법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확인 전산망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신청 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확인기관 및 확인유형별 평가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구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예비벤처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확인평가료	-	200	200	200
확인수수료	100			

다. 제출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벤처기업확인 신청일자 이후 발급분, 말소사항포함, 원본대조필)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 주주명부 사본 1부("벤처인" 신청일 이후 작성된 주주명부, 원본대조필)
- *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사본 (원본대조필) 또는 최근3개년도 감사보고서 1부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예정 또는 확정 최근신고분) 사본(세무서제출분, 원본대조필) 1부
-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원본대조필)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가능
- * 투자계약서 사본 및 입금내역확인증(필요시)

※ 서류제출방법

- * 벤처기업확인 담당자의 이메일 수신(신청일에 따라 매일 수신 기간 상이/최대 약 2주 소요)
- * 이메일 안내에 따라
 -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수수료 11만원(VAT포함)납부**
 -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 (<http://www.kvca.or.kr>)** ⇒ “주요사업” 클릭 ⇒ “벤처기업확인” 클릭
⇒ “벤처기업확인 신청정보 등록” 클릭 ⇒ 정보입력 및 필요서류 업로드

라. 처리기간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은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인결과를 통지함.(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제출이 완료된 날을 접수일로 보며, 서류미비로 심의일이

지연되어 신청일로부터 십의일까지 30일을 초과할 경우 재신청, 서류 재송부 해야함) 단, 벤처투자기관에 투자사실 확인을 의뢰 후 회신일까지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부득이하게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 통지 후 1회에 한하여 20일까지 연장 가능함.

마. 문의처

- TEL : (02)2156-2133

Q72

**연구개발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그 요건과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가.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2) 연간 연구개발비(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 3) 연간 총매출액(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분기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이상으로서 「벤처기업확인요령」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단,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별표2]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업 종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의약품(21)	6	6	6
기계 및 장비제조(29)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 (2918)제외>	7	5	5
컴퓨터및주변장치(263)	6	6	5
사무용기계및장비(2918)	6	6	5
전기장비(28)	6	5	5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262)	6	5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7)	8	7	6
기타제조업	5	5	5
도매 및 소매업(45 ~ 47)	5	5	5
통신업(61)	7	5	5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582)	10	8	8
컴 퓨 터 프 로 그 래 밍 , 시스템통합관리업(62)	10	8	8
정보서비스업(63)	10	8	8
인터넷산업	5	5	5
기타산업	5	5	5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3제7항에 따른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사업성 평가 기관

- ① 기술보증기금
-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③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④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나. 신청절차

연구개발기업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신청. 단, 연구개발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 이외의 사업성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을 명시하여 신청

다. 신청서류(벤처인(www.venturein.or.kr)에 업로드)

- (예비)벤처기업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신청일기준 30일 이내의 것으로 개인기업에 한함)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확인기관에서 안내)

Q73

벤처기업의 유효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또한, 벤처기업의 확인 후 취소 요건에 해당할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취소요건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의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입니다. 또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벤처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는 사항과 같으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①에 해당하는 때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 ② 법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③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기업의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법령

- 벤처기업특별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2(벤처기업확인의 취소) ①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流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벤처기업특별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2(벤처기업확인의 취소)

- ① 벤처기업특별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 3. 24.>
-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업의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Q74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무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건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1. 기술평가보증·대출에 의한 벤처기업 요건(모두 충족)

- 가.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성평가표 참조)
- 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

-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2)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제조현장스마트화
- (3)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4)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 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신성장기반자금 중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가능 정책자금으로 인정

- 다. 상기 “나”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 (참조) 기술성평가표참조

기술성평가표(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 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25 점)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6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기술인력관리	5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5			
소 계			25			
기술성 (52 점)	기술개발환경	개발전담조직	7			
		개발인력현황	7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7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7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기술의 선도성	6			
		기술의 완성도	6			
		기술의 확장성	6			
		생산시설확보수준	3			
		생산인력확보수준	3			
소 계			52			
사업성 (23 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4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6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4			
		국내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4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5			
소 계			23			
합 계			100			

※ 득점은 심사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A~E)별 반영비율을 곱하여 산출

등급별 반영비율 : A등급 5/5, B등급 4/5, C등급 3/5, D등급 2/5, E등급 1/5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의 득점을 기산점으로 부여하며, 득점합계가 100을 초과할 수 있음

* 기술가치평가 자가진단 : 기보홈페이지(www.kibo.or.kr) – 사이버영업점 –
자가진단 – 벤처기업확인용에서 기술평가등급을 산출해 볼 수 있음(회원가입 필요)

Q75

벤처기업이 될 경우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면 그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하는 정보와 공개하지 않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하는 정보

- ① 일반정보 : 상호, 업종, 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요제품 및 그 변경사항
- ② 재무정보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③ 투자 관련 정보 : 벤처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투자시기 및 그 변경사항
- ④ 보증 또는 대출 관련 정보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은 금액(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보증이나 대출받은 시기 및 그 변경사항
- ⑤ 벤처기업확인서 : 발급일, 유효기간 및 그 변경사항

2. 공개하지 않는 정보

다음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 ②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Q76

신생 기술창업기업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인력 및 자본 등 모든 부분이 미약합니다.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효율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벤처기업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이 있으나 신생기업의 경우 인력, 자금, 기타 자원 등 모든 부분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받는 것이 가장 접근이 가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다음, 벤처기업으로서 중소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다음 연구개발기업으로서의 벤처기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벤처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벤처기업은 연구전담인력이 2인 이상일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가 가능

Q77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주식교환을 위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의 범위와 취득기간, 교환주식의 보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가. 자기주식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① 자본금의 액
-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④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미실현이익(「상법 시행령」§19)

나.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 및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① 전략적 제휴의 내용
- ②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취득가격 및 취득시기에 관한 사항
- ③ 교환할 주식의 가액총액·평가·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 ④ 주식교환을 한 날
- ⑤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다. 교환주식의 보유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에 따라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이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식교환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라. 자기주식의 취득기간

자기주식의 취득기간은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 상법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Q78

교육공무원 등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을 할 때 관련 법규에 불구
하고 휴직을 할 수 있는 대상과 휴직기간 그리고
겸임이나 겸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 교육공무원 등과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직허용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허용

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직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등의 범위〉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2. 공공기관의 연구원의 휴직허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3. 휴직기간

휴직 기간은 5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4. 휴직연구원 등의 정원 조정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연구기관·공공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공공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5. 휴직연구원 등의 불이익 금지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연구기관·공공기관의 연구원 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교육공무원 등의 겸직이나 겸임에 관한 특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겸임이나 겸직을 할 수 있는 범위

교육공무원등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의 연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협의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습니다.

- 가.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 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위 “1”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교육공무원 등의 창업시 휴직 허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Q79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입니다.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여대상, 부여한도, 부여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제도란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기술혁신 및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자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적용대상 : 비상장, 코스닥 상장, 미등록(협회등록) 벤처기업

2. 부여대상(벤처법 제16조의3 ①)

- . 벤처기업의 임직원(다음에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대학의 교원, 국공립기관의 연구원
 - 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
-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대학 또는 다음의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 영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3. 부여한도

- 벤처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인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0/100 이내 부여
- 상법상 주권상장기업이나 협회등록기업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5/100 이내 부여
- 벤처기업이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 된 경우 스톡옵션으로 기 부여한 것이 상법에서 정한 한도(15/10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부여는 금지됨

4. 부여방법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방법
-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5. 행사가격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 해당 주식의 권리액 중 높은 금액 이상
-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이상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주식 수

6.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보통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4년~5년 정도로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Q80

벤처기업의 경우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는 산업재산권의 범위와 현물출자 시의 기술평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을 포함하며, 법인의 현물출자 자산의 내용과 현물출자 이행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음의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봅니다.

-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② 기술보증기금
- ③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④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 ⑤ 기술표준원
-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⑦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⑧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관련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 「상법」 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Q81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이 갖게 되는 특례조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상법제580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

Q82

실험실공장을 설치 할 수 있는 자와 실험실공장의 면적 그리고 등록절차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1.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

-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및 학생. 다만, 학생이 실험실공장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 ④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의 연구원
- ⑤ 벤처기업의 창업자

2. 실험실공장의 면적

- ① 바닥면적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산시설의 바닥면적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의 바닥면적만을 의미하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제조시설과 사무실, 창고 등의 바닥면적이 포함된다.

- ② 총면적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은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실험실공장의 등록

(1) 실험실공장의 설치 및 변경신고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와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실험실공장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영§11의10①, 칙§7의2①).

① 사업계획서

② 제조시설 배치도

③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장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의 설치동의서

(신청인이 학생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는 자가 당해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승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칙§7의2②).

(3) 승인여부의 통지 및 승인의제

- 소속 기관의 장은 른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속 기관의 장이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4) 시장·군수 등의 공장등록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18의2⑦)

4. 공장설립 등의 승인 또는 제조시설설치 승인의 의제

실험실공장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Q83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 일반기업에 비하여
특례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중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만 투자 대상에 해당이 되나 벤처기업은 모든 기업이 투자 대상임
 2. 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불산입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50%까지 가능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의 양도에 대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5.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창업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7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행한 투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감면
- *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 투자실적확인서의 발급 및 통보
- ① 투자실적의 확인 요청
- 소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투자실적확인서의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투자실적의 확인요청을 받으면 그 투자실적을 확인하여 투자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영§6③).

③ 양도사실의 통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투자실적의 확인을 받은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그 투자지분을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회수하거나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 또는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투자실적의 확인절차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실적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Q84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일반기업에 대하여 특례가 되는 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할 경우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합병계약서 공시 등의 기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공고와 최고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결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그 합병결의를 한 날부터 1주 내에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사항을 최고(催告)하여야 합니다(법§15의3①).

(2)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상법」 제3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는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습니다(법§15의3②).

(3)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합병을 할 경우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등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경우 그 공시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는 날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법§15의3③).

(4)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의 통지와 주식의 매수청구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항에 의하면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한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벤처기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알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법§15의3④).

(5) 주식의 매수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및 제5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합병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법§15의3⑤).

(6) 소규모합병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법§15의9①).

(7) 간이합병

「상법」 제5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의 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법§15의10①).

관련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Q85

벤처기업이 중소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중소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인적요건과 물적 요건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것은 일반기업과 동일하나 인적요건의 충족에 있어서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5명, 소기업의 경우 3명(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을 충족해야 하나 벤처기업의 경우 2명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 밖에 국세와 지방세 및 관세 지원이 있습니다.

1. 국세와 지방세 지원

-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 (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5)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6)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 (7)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2. 관세 지원

- (1)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 감면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제1호〉

6. 창업벤처기업의 조세 감면

Q86

창업기업에 대한 국세의 감면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의 세액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기업

- (1) 창업중소기업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 밀양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3)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1) 적용범위 : 당해 사업에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2) 감면비율

(가)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① 수도권과 밀양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② 수도권과 밀양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 밀양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3. 인지세의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응자관련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Q87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과 요건 및 감면세액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기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에 취업하는 경우

2. 취업대상기간 및 대상소득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3. 감면세액 및 감면기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과세기간 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Q88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 시 특례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 등에 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특례규정의 요건 및 증여세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대상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

2. 특례대상 자산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이외의 자산

3. 증여대상가액의 범위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을 한도로 한다

4. 특례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5.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Q8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부모님이 의약품도매상을 경영하고 있고, 본인도 임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본인이 의약품도매상을 창업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조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2 2006.09.14.).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항

Q90

20X8년 6월에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전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매출 실적이 없어 20X9년 3월에 폐업을 하고, 같은 해 6월에 대구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 감면 적용이 되는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설법인이 폐지한 개인사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승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 제10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설립의 경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항

Q91

당사는 법인등기부 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2008. 10. 6.로 등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2008. 10. 8.이며, 벤처기업확인서상 벤처기업확인일자는 2011. 10. 6.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일과 확인받은 날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Q92

신규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세 중 감면대상이 되는 세금과 구체적인 감면내용 및 요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①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2. 취득세의 경감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합니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간 경감합니다

3. 재산세의 감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관련법령

- 「지방세특별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Q93

수도권과 밀접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 밀접제권역에서 창업을 할 경우 지방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
-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 밀접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Q94

제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공장을 경락 받았으며 경락 당시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일괄 경락 받았고 그 당시 같은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방세를 감면 받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사실상 지금까지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데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추징당하게 되나요?

A

사업자가 폐업 전 사업과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추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
-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Q95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 밀양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합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한법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 밀양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6. 12. 27.)

Q96

개인사업자로 대전에서 2006년 6월 3일 개업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5년 9월 28일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2015년 12월 16일 대전에서 하던 업종과 같은 업종(또는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한법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특례한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Q97

영농조합법인을 창업 후 2년 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한 농지와 도정공장을 취득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한 도정공장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 기업의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영농조합법인이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해당할 경우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75%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Q98

당 법인은 2004년 창업해서 공장 및 기계시설을 임차 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년 11월쯤 다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해서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본점 이전 후 기존사업은 폐업할 예정이며 새로운 공장을 구입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A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75%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나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문의의 경우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종전 사업장을 폐쇄한 후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이는 폐업 후 사업재개나 업종추가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새로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 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75%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항

Q99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재산세가 감면이 되는지, 아니면 직접사용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아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요?

A

창업자가 운영하던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지한 휴업상태인 경우라면 직접사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폐업상태인 경우라면 이를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

창업

7. 창업기업의 부담금 감면

Q100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시 감면되는 부담금의 종류
와 요건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의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 ①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②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2.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게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에 계기하는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 ①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 ②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③ 「초지법」 제23조 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④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 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제2호의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 ⑥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m³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한다)
 - ⑧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⑫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⑭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 ⑮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 ⑯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Q101

본인은 소기업법인을 설립하여 임대공장을 임차하여 공장등록을 하였고 인근지역의 공장을 경매로 구입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경력받은 공장의 앞 부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설하고자 군청에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본인과 설립법인은 자가 공장 설립은 처음인데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A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임대공장으로 공장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창업 후 7년 이내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하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①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5. 2. 3., 2018. 12. 31. >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②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0. 6. 8., 2015. 2. 3., 2017. 1. 17., 2018. 12. 31. >

1.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의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

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만 해당한다)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2. 「산자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14.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1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Q102

광역시에서 공장동 450제곱미터, 정도의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소유한 입지조건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인 경우 농지 전용부담금 등이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의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 ①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②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소기업의 범위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소기업으로 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면제대상부담금(「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제62조의10제2항)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Q103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 사업체를 1개소 가진
자가 같은 지역 내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장을 1개소
설립할 경우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0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부담금 면제 규정은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한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소기업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의 매출액을 합하여 적용하며 면제대상 공장의 건축면적도 당해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의 공장 건축면적을 합하여 1,000m²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10(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등)

공장등록 등의 의제와 각종 부담금의 면제에 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의 건축 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음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 ① 제조사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종의 바닥면적
- ② 제조사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③ 사무실 및 창고의 각종의 바닥면적

2) 수도권 외의 지역

다음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 ① 제조사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종의 바닥면적
- ② 제조사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Q104

창업사업계획승인서를 교부받은 신규창업자가 다른 창업자에게 명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의 면제와 취득세의 감면요건이 계속 유지되는 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창업사업계획승인서를 교부받은 신규창업자가 다른 창업자에게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는 받을 수 있으나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 12.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8. 기타

Q105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의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소요자금의 추정과 조달 및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창업기업의 자금계획 수립은 사업의 수행과 미래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확히 예측하여 자금의 부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활동입니다.

1. 소요자금의 추정방법

(1) 고정자금의 추정

사업계획서 등의 세부조사에 의하여 구입 및 설치비용을 견적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2) 운영자금의 추정

1회전 운전자금

$$= \text{순원가}/(\text{년}) \times 1\text{회전기간}(\text{년})$$

$$= (\text{제조원가} + \text{판매비} + \text{일반관리비} - \text{감가상각비}) \times 1\text{회전기간}(\text{년})$$

$$= (\text{연간매출액} - \text{영업이익} - \text{감가상각비}) \times 1\text{회전기간}(\text{년})$$

(3) 창업준비자금

창업계획에 따라 창업준비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직접 추정

2. 자금의 조달방법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크기는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은 소요자금의 1.5배 내지 2배정도로 수립하고 사업규모는 자금조달능력의 2/3 내지 1/2정도로 하는 것이 안전하며 성공적인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투자자, 금융기관 및 제3자에게 추진 사업에 대한 관심유도와 투자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된 사업계획서가 필수적입니다.

(1) 정확한 소요자금의 규모와 적절한 조달시기의 검토

(2) 금융환경의 이해와 적절한 대응

① 수시로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 강화

② 자금집행의 감시활동 수행과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의 인정비율 약화

(3) 합리적인 자금조달의 전략 수립

자금의 크기, 상환기간, 금리, 담보 및 신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리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정책자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사전 준비의 철저

(5)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금융기관 및 지원기관의 접촉

- ① 사업계획을 부풀리거나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신뢰성을 상실하게 됨.
- ② 면밀하고도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을 접촉
- ③ 정책자금 해당 기관의 배정을 받았을 경우에도 자금의 실행은 금융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음.

Q106

주위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부의 창업지원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의 지원에 의존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구요. 창업지원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지원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아이템과 유능한 창업자 그리고 지속가능한 시장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의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며 이들을 잘 결합한 경영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각종 창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할 것이 지원제도 만을 활용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특히 지원제도

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지원시책에 대한 기본사항의 정확한 이해
2. 지원제도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구비
3. 지원제도에서 제외시키거나 감점이 되는 사항의 제거
4. 성장단계별 회사시스템의 수립(ISO체계수립, 벤처기업의 인증,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신고,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인증,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 인증 등)
5. 필요한 서류의 준비 및 작성능력 배양
6. 사업아이템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확신 보유
7. 사업아이템과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능력의 배양
8. 혁신적인 기업가정신과 기타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

Q107

1인 창조기업으로 전통식품을 제조하고자 합니다.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식품산업 진흥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그에 따른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 1인 창조기업의 심사항목 및 기준이 일반 전통식품의 심사항목 및 기준보다 간단(1인 창조 : 21개 심사항목, 74점 배점 / 일반 전통식품 : 30개 심사항목, 100점 배점)
- 합격기준이 상이함(1인 창조 : 51점 이상 배점, 'C'항목 3개 미만 / 일반 전통식품 : 70점 이상 배점, 'C'항목 5개 미만 등)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
- [별표 6] 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제4호
- 「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 제29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 「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16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 [별표 2] 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Q108

1인 창조기업의 규모 확대로 인한 인정의 특례관련 질문입니다. (원고 누락)

A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에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①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3조 본문에 따라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Q109

서울에서 출판관련 사업으로 창업하려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나요?

A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부동산업 등 다음에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관련 사업은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갖출 경우 1인창조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1. 광업	가.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나. 금속광업	06
	다.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라. 광업지원서비스업	08
2. 제조업	가. 담배제조업	12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다. 1차 금속 제조업	24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나. 수도사업	36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5. 건설업	가. 종합건설업	41
	나. 전문직별 공사업	42

6. 도매 및 소매업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7. 운수업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나. 수상 운송업	50
	다. 항공 운송업	51
	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8.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숙박업	55
	나. 음식점 및 주점업	56
9. 금융 및 보험업	가. 금융업	64
	나. 보험 및 연금업	65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업	68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 보건업	86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관련법령

- 「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Q110

제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A

창업은 희소한 경영자원을 배분하여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자기 자신이 창업을 하기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한 다음, 사업목적과 사업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적절한 자본을 투자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화하여 창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창업환경 예비분석

창업희망자는 먼저 자신의 자질 및 적성 등을 파악하여 창업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자신이 가진 창업환경자원이 창업하기에 충분한지 또 창업 시기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② 사업 아이디어의 모색

창업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가의 여부는 사업 아이템이 얼마나 유망하고 창업자에게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아가 사업 아이디어가 얼마나 시장환경조건에 적합한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타당성 분석

모든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타당성분석을 통하여 발생 될 사업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타당성분석의 내용은 추진사업의 적합성,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④ 사업계획서의 작성

사업성 분석에서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가 유망한 것으로 판단되면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에는 제품 계획, 시장성과 판매계획, 생산 및 설비계획, 일정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활동이 내역별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⑤ 사업의 인·허가검토

인·허가 사항은 사업을 하기 전에 각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인·허가업종은 개별법령에 의하여 제조활동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만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창업자는 관련법에 의해, 협회·승인·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의 여부를 창업 준비단계에서 알아야 합니다.

Q111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성공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타당성분석을 하는 경우 기본체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타당성 분석은 크게 나누어 1단계 사업성 분석(예비사업성분석)과 2단계 사업성 분석(사업성분석)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비사업성분석은 소수의 특정 사업아이템을 선정하기 전에 다수의 예비 사업 아이템을 선별해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제2단계 사업타당성 분석은 예비 사업성분석에서 1차적으로 선정된 후보사업 아이디어의 상세한 분석을 말합니다. 평가요소는 추진사업의 수행능력 및 적합성 분석, 시장성 및 판매전망 분석, 제품 및 기술성 분석,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 자금수지분석 등을 통해 사업 성공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① 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창업자의 적성과 자질이 있는가?

창업자 또는 경영자는 사업의 핵심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의 성공여부의 90%는 기업가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떤 계획된 성공과 실패는 그 일을 추진하는 주체 내지는 참여 인적요소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타당성분석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할 사항이 바로 창업자 또는 경영자의 계획사업의 수행능력과 계획사업과의 적합성분석인 것입니다.

② 계획제품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팔릴 것인가?

상품을 어디에 얼마나 팔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시장성분석입니다. 아무리 품질이 우수하고 신제품이라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결코 사업에 성공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성 분석의 핵심요소는 전반적인 시장동향분석, 제품의 경쟁력분석, 수요예측 분석 그리고 시장 및 제품 환경분석 등 시장성분석의 핵심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시장은 공급자(기업)와 수요자(고객)가 서로 만나는 곳으로, 시장을 분석한다는 것은 시장의 변화 즉 고객욕구의 변화를 이해한다는 것이며 아울러 제품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분석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시장의 범위를 파악하고, 시장의 외형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수요예측을 파악하여 시장매력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③ 계획제품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상품으로 출시 가능한가?

기술성분석이란 제품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사업타당성 평가부분으로서 계획 제품의

특성, 생산공정의 적정성, 공장입지 조건의 적합성,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계획시설의 적정 여부, 생산계획의 적정성, 소요 원재료의 수급계획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평가 요소 중 가장 어렵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계획사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기술의 유용성, 기술의 위험 요소 및 기술적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④ 계획사업의 수익성과 경제성이 있는가?

시장성과 기술성의 분석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 종합적인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는 단계로 사업의 내용이 시장성과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경제성 즉 수익성이 없다면 사업 참여 가치가 없습니다. 수익성 검토 요소는 대부분 향후 전망을 현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되는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자금수지예상표 등 추정 재무제표 작성이 핵심이 됩니다.

⑤ 계획사업을 위하여 소요자금은 얼마나 필요하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더라도 그 사업에 필요한 적정자금의 규모와 적기에 자금조달능력 여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요자금의 규모결정은 사업규모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규모는 자금조달능력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소요자금 규모의 결정은 자금조달능력과 연계시켜 검토해야 합니다.

Q112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고려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A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1.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사업계획서는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관에 따라 내용상 차이가 있으며, 분량과 첨부서류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가 직접 작성하느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느냐에 따라 전문성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미리 기본계획과 작성 순서를 정하고 작성해야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내용도 충실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실제 작성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사항과 기본 순서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작성의 목적에 따라 기본 방향을 설정

사업계획서 작성의 목적에 따라 기본목표와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목표와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사업계획서가 초점을 잃기 때문입니다.

② 작성의 용도에 의한 소정양식존재 여부

사업계획서 작성의 목적은 사업타당성 여부검증을 포함해서 창업자 자신의 창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 및 자금조달 등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용도와 제출기관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소정의 양식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특정기관의 소정 양식이 있는 경우는 그 양식에 의거해 작성하면 별 문제 없지만, 특정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작성해야 할 사업계획서의 양식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작성에 직접 필요한 자료와 첨부서류 등의 준비

관련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요구기간 내에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직접 필요한 자료와 첨부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④ 해당분야의 비전문가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

사업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해하기 쉬운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들의 언어 및 내용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때 기술적인 전문용어나 특정 업종의 속어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쉽게 작성하도록 하며 문장은 간결성과 명료성을 넘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은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⑤ 간결하고 명료하면서도 분명하게 작성

초기 창업자들은 사업에 대한 지나친 열정과 의욕으로 사업계획서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자 하는 실수를 자주하게 되며 대부분의 보고서는 분량이 적을수록 좋은 보고서이며 분량은 가능한 20쪽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⑥ 객관성과 주관성의 조화

사업계획서는 사업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신념과 확신을 적절히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사실과 추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명기하고 추정의 근거를 밝혀야 신뢰성이 있는 사업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

⑦ 일관성과 정확성 유지

앞뒤 내용이 연결되지 않고 주장과 관점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계획서 및 제시되는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사업계획서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2. 사업계획서 구성

사업계획서는 사용되는 용도와 제출기관에 따라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 입주신청용 사업계획서
- 자금조달을 위한 사업계획서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정책관련기관 제출 사업계획서
-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 기타용도의 사업계획서

일반적인 사업목적의 사업계획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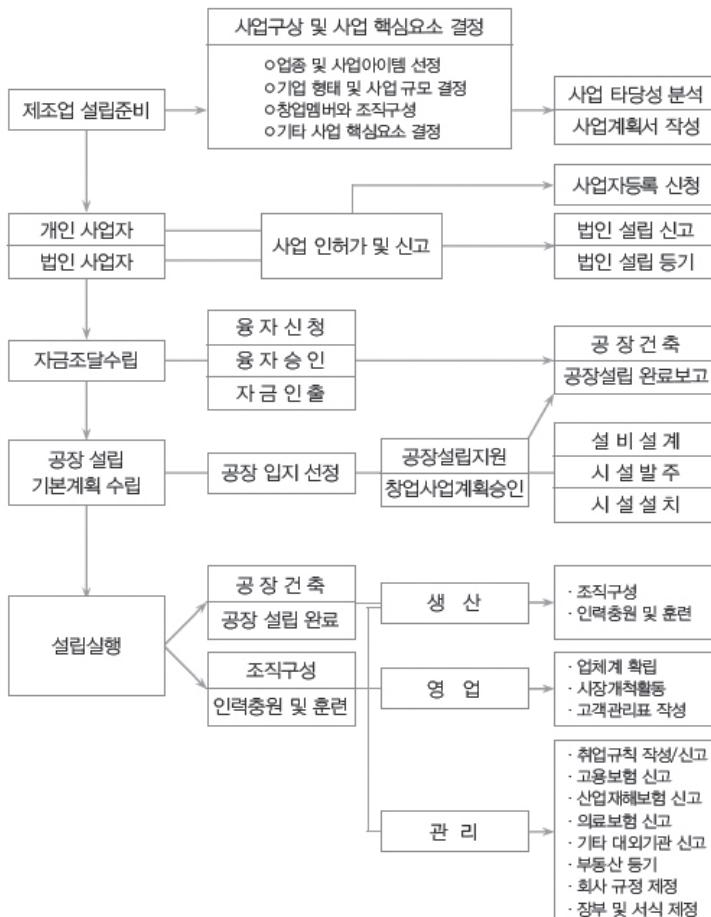
<p>I. 회사의 개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체의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사의 개요 2) 업체연혁 3) 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효과 4) 사업전개방안 및 향후계획 2. 조직 및 인력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 및 경영진현황 2) 주주현황 3) 관계회사 내용 4) 조직도 5) 종업원 현황 및 충원계획 <p>II. 기술개발 및 생산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현황 및 기술개발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상품)의 내용 2) 사업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투자 현황 및 계획 2. 생산 및 시설투자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 및 시설현황 2) 생산공정도 3) 생산실적 및 가동현황 4) 원부자재 사용 및 조달계획 5) 시설투자계획 	<p>III. 판매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산업의 최근 동향 2. 동업계 및 경쟁 현황 3. 판매현황 4. 목표시장 규모 및 수요전망 5. 연도별 판매계획 및 마케팅전략 <p>IV. 재무 및 수익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현황 2. 추정재무제표 3. 향후 수익전망 <p>V.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요자금계획 2. 자금조달계획 3. 차입금상환계획 <p>vi. 사업추진 일정계획</p>
--	---

Q113

특허 등록된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창업하려 합니다.
제조업 창업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구성한 사업에 대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창업멤버와 조직구성 및 기타 핵심요소를 결정하고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기업형태결정 등 다음과 같이 제조업 창업절차를 추진합니다. 사전에 직접 필요한 자료와 첨부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Q114

제조업을 창업하려 합니다.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공장 시설 없이 창업을 하려는 경우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나요?

A

제조업이라 함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및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포장, 분할, 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한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31조).

-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 할 것.
- ②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참고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에 예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된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2-4-1).

- ① 광업권소유자가 광구 이외의 지역에 제련 또는 선광시설을 하고 자기가 채굴한 광물을 제련 또는 선광하는 경우. 다만, 단순히 자기가 채굴한 광물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광물을 분쇄하는 것은 광산업에 해당된다.
- ②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
- ③ 화장지 원지 및 필름 등을 구입하고 이를 절단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 ④ 타인소유 제조장을 임차하여 당해 제조장을 이용하여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참고2〉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의 경우(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4-3)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의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하고
 - ②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 ③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 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참고3〉

일부 위탁제조·가공하는 업태의 경우(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4-4)

제조장을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①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 내에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 ② 제품 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게 하여 동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참고4〉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4-2)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된다.

Q115

개인으로서 도·소매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도·소매업 창업절차를 알려주세요.

A

1. 도매업이란

도매업은 구입한 신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단체 및 기관 등에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2. 도매업의 형태

- 가. 일반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도·소매업자, 산업 및 산업단체, 기관 등에 판매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나. 상품중개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상품을 도매하는 대리점이나 상품을 중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다. 무역업은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전문 또는 종합상품의 대외거래만 전업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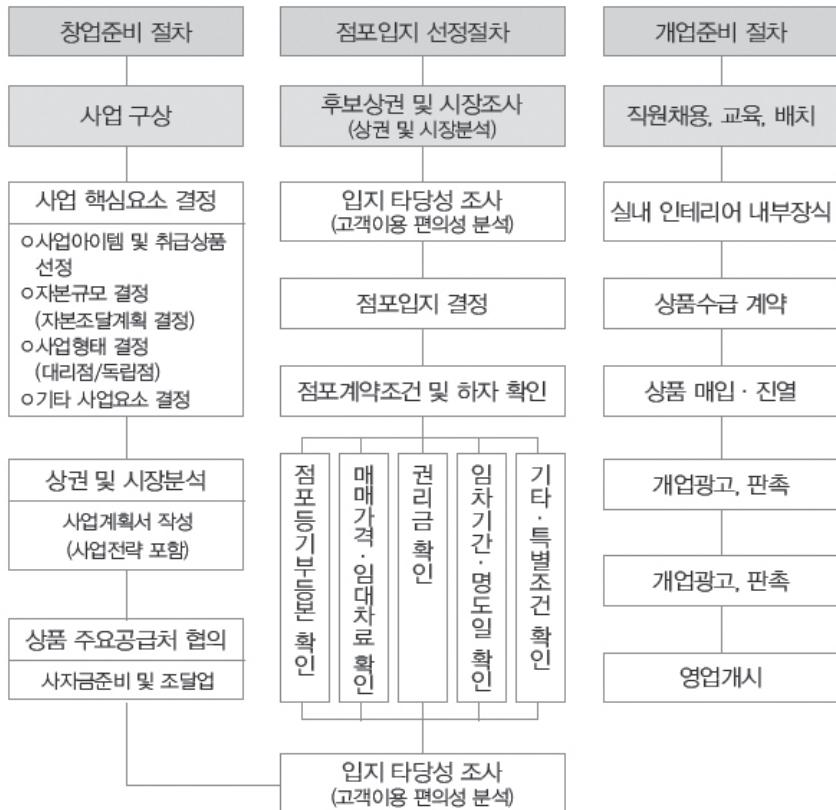
3. 소매업이란

구입한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4. 소매업의 형태

- 가. 일반소매업은 동일한 주된 품목을 계속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백화점, 슈퍼마켓, 대형할인점 등 단일경영체계를 가진 종합소매업은 제외).
- 나. 종합소매업에는 백화점, 슈퍼마켓, 대형할인점 등과 같이 단일 경영체계를 갖고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다. 특수소매업은 일반 구매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부분의 소매상은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나 특정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소유자를 대리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도·소매업의 창업절차



Q116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창업절차를 알려주세요.

A

1.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2조1항6호, 시행령 2조)에 규정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가리키는데,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2. 외국인의 국내진출방법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거나 사무소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법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내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립됩니다. 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4.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외국법인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5.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 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2개 단계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신고방법

외국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내국인을 지정하여 신고

(2) 제출서류(3) 신고접수기관

구 분	제출 서류	제출 시기	
1. 공통제출서류	가. 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해외 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외국투자가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2. 투자형태관련	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면서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원 파견 또는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의미함) 사본 1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시까지
	나.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양수인 간의 특수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2. 투자형태관련	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해외 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1)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3) 차관계약서 사본 1부	차관자금 송금 전까지
	라.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출연하려는 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시까지
3. 출자목적물 관련 제출서류	마.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출연하려는 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시까지
	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시까지
	가. 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 하는 경우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청시까지
	나. 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 하는 경우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라 분배되는 남은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청시까지

3. 출자목적물 관련 제출서류	다. 법 2조제1항제8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 · 출연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도입된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청시까지
	라. 법 2조제1항제8호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 · 출연 하는 경우	영 제2조제10항 각 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비상장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 ·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내공인기관의 주식가치평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간의 교환조건(교환금액 · 교환비율 등)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1부를 함께 제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청시까지
	마. 법 2조제1항제8호아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 · 출연 하는 경우	출자 · 출연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청시까지
	바. 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 및 영 제2조제11항의 출자목적물을 출자 · 출연 하는 경우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청시까지

(3) 신고접수기관

외국환 은행의 장,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처리절차



※ 기타 자세한 설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044-203-4073)

6. 근거 법규

(1) 기본법령

-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①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산자원부 고시)
 - ②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통산자원부 고시)
 - ③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 고시)
 - ④ 조세특례제한법(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시행령·시행규칙

(2) 기타법령

- ① 외국환거래법 :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
-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CHAPTER
02

편집위원 소개

▶ 창업



김진영

- 경영지도사, 경영학 박사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부회장
- 일신경영컨설팅 대표이사
- E-mail : ilsin900@hanmail.net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

-
-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중소기업성공도우미 ☎ 1357, <http://www.mss.go.kr>)
 - 발행일 : 2014년 01월 편집일 : 2020년 07월

이 책의 저작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습니다.
본서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

—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